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50 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한병도・위성곤・이광희

신정훈 • 박정현 • 이해식

모경종 • 이상식 • 양부남

김성환 · 강선우 · 채현일

윤건영 · 김성회 · 김영환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 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.

그런데 현행법상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,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.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최근 "5·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"고 발언하는 등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바,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진실·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,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4조제4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6360호) 및 「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35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진실 ·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4항 중 "대통령이"를 "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위원장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	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
④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	4	
<u>대통령이</u> 임명한다.	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	
	<u> 령이</u>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